

# 행 정 자 치 부

##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정보 열람·제공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밀양시, 함양군

내 용

경상남도 밀양시, 함양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필요한 경우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이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2015. 12. 31. 행정자치부예규 제36호) 제26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업무처리지침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산처리하여야 하여야하고,

「2013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 ‘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와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증명자료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공문요청 등이 있어야 주민등록표를 열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659건<sup>72)</sup> 공무상 필요하다는 사유<sup>73)</sup>로 일반업무 담당자가 구두로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요청 하면 해당 자료의 공문이나 증명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열람·제공하였으며,

신청자란에는 주민등록등표의 열람을 신청한 일반업무 담당자를 입력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입력하는 등 주민등록표의 개인정보가 사적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유출 및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밀양시장, 함양군수는

주민등록표를 공무상 필요사유로 열람·제공시 관련법령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72) 밀양시 ○○동사무소 179건, 함양군 ○○면 480건

73) 지갑분실관련 인적사항 확인, 민방위 당연제외자 편성관련, 아리랑 대축제 관련 안내 확인,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확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 확인 등